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은경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## 1. 의결주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·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계절근로(E-8)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. 27. ~ 3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##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2호 중 “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”을 “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제6호에 따른 기술연수(D-3)의 체류자격

나.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(E-8)의 체류자격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2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09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의2(외국인의 범위) 법 제7조제4항에서 “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3조의2(외국인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제6호에 따른 기술연수(D-3)의 체류자격</p> <p>나.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(E-8)의 체류자격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505